**정 관**

주식회사 마인드웨어웤스

**정 관**

|  |  |
| --- | --- |
| 제정 | 2010. 05. 09. |
| 개정 | 2014. 12. 19.2015. 03. 31. |
|  | 2017. 12. 27. |
|  | 2020. 04. 01. |
|  | 2021. 03. 31. |
|  |  2022. 03. 31 |

#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마인드웨어웍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MindwareWorks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에 관한 사업
2. 소프트웨어 및 전기/전자/네트워크 기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자문/개발업
3.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연결하드웨어 기기/장치의 제조, 유통업
4. 업무/교육/판촉용 콘텐츠 기획, 개발, 공급업
5. 각종 판촉용품 공급업
6. 사무실, 숙박업소, 건물 등의 내외장 인테리어 및 도소매업
7. 소프트웨어 해외 판매 및 수출업
8. 소프트웨어 임대 및 서비스업
9. 위 각항에 관련된 수출입업 및 대행업
10. 위 각항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11. 위 각항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12. 학술연구용역
13.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제3조(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www.mindwareworks.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 다.

**제7조(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 이 회사는 설립 시에 100,000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9조(우선주의 수와 내용)**

1. 이사회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 없는 것으로 하되, 우선주 발행 시 이사회의 의결로 의결권 있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2.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의 수는 이천만주로 한다.
3.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이상 10%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4.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우선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으로 할 수 있다.
5. 어느 사업연도에 우선주식에 대하여 우선배당률에 따른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6. 무의결권 우선주식의 경우 우선주식에 대하여 우선배당률에 따른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일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7.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8.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우선배당률에 따른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 2(전환주식)**

1. 이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은 전환 전 주식의 총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주식분할 또는 합병 기타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 3 (상환주식)**

1. 이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2. 상환주식의 우선상환은 발행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상환주식의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 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일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4.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배당률에 따른 소정의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5.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6. 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7.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 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여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제9조의 4 (상환전환주식)**

이 회사는 제 9조의 2 및 제 9조의 3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주식에 대하여는 위 제 9조의 2 및 제 9조의 3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한다.

**제10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 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 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 등에 따라 신주를 모집, 매출 또는 입찰하 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 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3. 관계 법령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 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 여 하는 방식
4.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5. 관계 법령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 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7.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규정」 제 10조의 2에 따른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 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 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 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 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 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 의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 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 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상법시행령 제9조 제1 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 및 그 특수 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 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 포함}는 제외한다.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주요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함) 및 그 특수 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 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 포함)는 제외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 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 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 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

1.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 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 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 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 는 재직 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 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 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 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 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 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으로 한다.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6월 이상 2 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 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 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 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 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신주의 동등배당)** ① 회사가 정한 배당 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② 제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제15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 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6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 로 정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 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 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 야 한다.
2.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제17조의 2(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 352조의 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회사가 제 ①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 ①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사 채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 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 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 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 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 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무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후 공모의 경우 1월, 사모 는 1년이 경과한 후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회사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주총회 특별결 의로 전환사채 부여시의 전환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 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 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 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 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후 공모의 경우 1 월, 사모는 1년이 경과한 후 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회사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주 총회 특별결의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부여시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십억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100분의 10의 비 율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이익참가부사채에 대하여는 중간배당은 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제22조(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십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22조의2(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 우에 준용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제17조 준용규정은 삭제한다.

# 제4장 주주총회

**제24조(소집시기)**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제25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정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 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서울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 자의 성명·약력 등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 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 등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의 경영참고사항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 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증권업협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 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8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 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1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2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

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 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 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5조(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 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5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

## 제1절 이 사

**제36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둘 수 있다.

**제37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 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 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8조의 2(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 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의 2(집행임원)**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② 집행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③ 집행임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

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 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다.

**~~제41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삭제~~

## 제2절 이 사 회

**제42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 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 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3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단,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 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4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5조(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 을 둘 수 있다.

**제3절 대 표 이 사**

**제46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47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6장 감 사

**제48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49조(감사의 선임,해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 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1.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2. 제 ③항∙ 제 ④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50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 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 4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1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 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 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2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3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 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 제7장 회 계

**제54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 다.

**제55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 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1.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는 제 ⑤항 또는 제 ⑥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 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7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8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4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 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 58조의 2(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1. 제9조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59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부 칙(2015. 3. 31.)

본 정관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 12. 27.)

본 정관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 04. 01.)

본 정관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 03. 31.)

본 정관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의 단서, 제10조의2, 제16조 제3항의 단서, 제17조의 제4항, 제23조의 단서조항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날과 회사의 상장일 중 나중 도래한 날부터 적용하며, 제 55조는 회사가 사업보고서제출의무 회사가 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2. 03. 31.)

본 정관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마인드웨어웤스 105-87-44546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2길 19대성빌딩2층

 대표이사 이 재 인